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행정업무의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업무를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3. 주요내용

가.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변동사항 ‘신고 기산일’ 구분(안 제24조)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기산일을 구분하여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은 고용주가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신고 기산일로 하고, 외국인의 사망·소재불명은 고용주가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어 ‘사유를 안 날’이 신고 기산일로 함.

나. 학교장의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항 ‘신고 기산일’ 구분(안 제24조의8)

학교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기산일을 구분하여 미등록·휴학·제적·연수중단은 학교의 장이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신고 기산일로 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행방불명은 학교의 장이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어 ‘사유를 안 날’이 신고 기산일로 함.

다.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업무를 위임(제96조)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이 개정되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관련 업무(숙박업자의 외국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관리·조사)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함.

라. ‘사증 접수 및 교부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제96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되어 행정사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증접수 등에 관하여 위탁하는 업무, 수탁기관, 위탁 선정 기준, 위탁기간 등을 마련함.

마. 생체정보 용어를 정비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5호가 개정되어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 얼굴 외(外)에도 홍채, 손바닥 정맥을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생체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 ‘얼굴, 지문’을 ‘생체정보’로 용어를 수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에 관한 정보(이하 “생체정보”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를 “(생체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발생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퇴직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외국인의 소재불명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

제24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등록·휴학·제적 또는 연수중단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행방불명 사실을 안 날

제35조제4항 후단 중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한다.

제87조제2항제7호 중 “얼굴”을 “생체정보”로 한다.

제7장의2에 제8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11(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자료를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89조,”를 “제79조의2, 제79조의3, 제81조의3, 제89조,”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신청의 접수,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상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위탁 대상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 구비할 것

2. 재정 건전성이 있을 것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할 것

4. 위탁업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 요건 등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다.

별표 2의 개별기준에 과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파. 법 제8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숙박외국인이나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법 제100조 제3항제1의2호, 법 제100조 제3항제1의3호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u>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u> 를 등록하였을 것	2. ----- ----- <u>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에 관한 정보</u> (이하 “생체정보”이라 한다)- --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 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	나. -----

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
하였을 것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입국심사)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
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
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생 략)

⑤ ~ ⑩ (생 략)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 생체정보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입국심사)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
----- 생
체정보 -----

-----.

1. (현행과 같음)

2. -----
----- 생체정보 -----

3.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생체정보 제공 의무의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 다.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 ① -----

-----.

1. -----

----- 생체 정보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생체정보 -----

② -----
----- 생체정보 -----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신 설>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③ -----

----- 생체정보 -----

-----.

④ -----
----- 생체
정보 -----

-----.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발생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퇴직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외국인의 소재불명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5조(출국심사) ① ~ ③ (생략)

④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87조(보고의 의무) ① (생략)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등록·휴학·제적 또는 연수중단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행방불명 사실을 안 날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출국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생체정보-----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보고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6. (생략)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 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3

-----.

1. ~ 6. (현행과 같음)

7. ---- 생체정보-----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의11(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자료를 말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

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신설>

제79조의2, 제79조의3, 제81조의3, 제89조, -----

②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신청의 접수,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상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위탁 대상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받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
력 구비할 것

2. 재정 건전성이 있을 것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과 장비를 구비할 것

4. 위탁업무 관련 전문성을 보
유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 요건
등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